

2020. 12. 8.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개정 내용(55p)

분할 사용 횟수 증가(1회⇒2회)

- 사용자가 노동자의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**2회까지 허용할 의무 발생**
ex) 3개월 육아휴직 - 복직 - 3개월 육아휴직(1회 분할) - 복직 - 6개월 육아휴직(2회 분할)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분할 횟수	1회 에 한하여 사용자가 분할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.	2회 에 한하여 사용자가 분할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.
개정법 적용방법	2020. 12. 8.부터 시행되나, 이 법 시행 전에 휴직을 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	

※ 관련 법령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